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서울교육대학교와 주식회사 다울소프트 간의 상호 발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라 한다)와 주식회사 다울소프트(이하 “다울소프트”라 한다)는 양 기관의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서울교육대학교와 다울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 자원과 노하우를 호혜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제휴를 통하여 상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울소프트의 역할)

다울소프트는 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서울교대와 부설초등학교에 다울소프트의 제품(LectureMaker, TestMAKER, E-Class system)을 무상 제공한다.
2. 서울교대에서 원활하게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3. 서울교대에서 연구된 기능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공급한다.

제3조 (서울교육대학교의 역할)

서울교대는 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서울교대는 기증된 제품의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2. 서울교대를 제품의 활용기관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3. 서울교대는 제품 활용을 통해 발생한 개선사항, 문제사항 등을 다울소프트에 제공한다.

제4조 (협약기간)

본 양해각서는 양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되,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협약에 대한 변경 또는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1년씩 동일 협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비밀유지)

양자는 본 양해각서상 양자가 직무수행의 필요로 쌍방에게 공개한 비밀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본 양해각서가 종료된 때 쌍방은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중 제공된 비밀정보를 이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없다.

본 양해각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 01. 1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0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송광용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24-6
주식회사 다울소프트
대표이사 양주명

